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서 동 학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4호 중 상위법령의 조문번호와 법률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6호” 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고” 를 “않고” 로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제4조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해서는 안된다” 로,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을 “않는” 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 중 “초과하거” 를 “넘거”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이내에 한한다” 를 “이내로 한정한다” 로,
 - 제6조제1항 중 “공익근무요원” 을 “사회복무요원” 으로,
 - 제7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한” 을 “넘는” 으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4 조” 를 “제4조” 로, “초과한” 을 “넘는” 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 제9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 를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